	가 정 통 신 문 - 학생인권교육안내[학부모용] -	-교 훈- 공 경(恭 敬) 성 실(誠 實) 협 동(協 同)
조종중학교	소통과 성장 그리고 꿈이 있어 행복한 학교	제2021- 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생의 인권보호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0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하고 동년 10월 5일 공포·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규범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언어, 용모, 장애,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습권, 안전권 등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종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학교 교칙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 갈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학생인권옹호관 홍보 리플릿

2021년 7월 16일

조 종 중 학 교 장

붙임1. 학생인권옹호관 홍보 리플릿

